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위성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7급 28명, 8급 40명, 9급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업무 전담 부서로 지정한 장기전략기획팀장의 명칭을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를 “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전략기획팀장”을 각각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전략기획팀장”을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44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직 및 정원”을 각각 “조직”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594”를 “597”로 하고, 일반직 계 “590”을 “593”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1”을 “52”로, 전산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

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
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96”을 “197”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597”을 “6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3”을 “596”으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50”을 “5
1”로, 전산사무관 “2”를 “3”으로,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
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
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04”를 “205”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장기전략기획팀”을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전략기획팀장”을 각각 “장기전략데이
터기획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9]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4조의3 관련)

평가대상 조직

조 직	정 원	평가기간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15명 (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u>제20호의2 및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u> 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u>제20호의2,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u> ----- ----- ----- -----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u>장기전략기획팀장</u> ·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u>장기전략기획팀장</u> 은 서	④ ----- -----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u> ----- ----- ----- ----- ----- ----- ----- ----- ----- -----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u> -----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 무관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u>장기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 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 좌한다.</u> 1. ~ 5. (생 략) 6. <u>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u> 7. <u>해양수산 부문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업무</u> 8.·9. (생 략) ⑦ ~ ⑩ (생 략) 제44조의3(평가대상 <u>조직 및 정 원</u>)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u>조직 및 정원</u>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9와 같 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 ⑤ (현행과 같음) ⑥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 -- ----- -----.</u> 1. ~ 5. (현행과 같음) 6. <u>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 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u> 7. <u>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를 위한 계획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u> 8.·9.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평가대상 <u>조직</u>) ----- ----- ----- <u>조직</u> ----- ----- -----.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장기전략기획팀</u> 및 <u>수산직불제팀</u>은 각각 2024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u>장기전략기획팀장</u>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 및 <u>수산직불제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장기전략기획팀장</u>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하고, <u>수산직불제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u> ----- -----. ② -----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u> ---- ----- ----- ----- ----- <u>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4</u>	<u>597</u>	+3
·	·	·	
·	·	·	
일반직 계	<u>590</u>	<u>593</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51</u>	<u>52</u>	+1
·	·	·	
전산사무관	<u>2</u>	<u>3</u>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 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u>196</u>	<u>197</u>	+1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 해양수산연구원			
· ·	· ·	· ·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97</u>	<u>600</u>	+3
·	·	·	
·	·	·	
일반직 계	<u>593</u>	<u>596</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환경사무 관	<u>50</u>	<u>51</u>	+1
·	·	·	
전산사무관	<u>2</u>	<u>3</u>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 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 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u>204</u>	<u>205</u>	+1

	.	.	.	
	.	.	.	